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41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4월 2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04.28. ~ 2023.05.11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정
1	고광익	1967.00.05.	0178200274100008836 0178200274100008220 0178200274100008835	₩8,920,800 ₩38,646,000 ₩40,752,000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5 번길
2	이종영	1967.00.04.	0178200274100008222 0178200274100003477 0178200274100008863	₩18,338,400 ₩18,468,000 ₩21,394,800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64 번길
3	백성준	1980.00.26.	0178200274100008242	₩31,860,000	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 29 번길
4	백문운	1990.00.25.	0178200274100003480	₩10,404,000	충북 충주시 성터 9 길
5	유대기	1967.00.06.	0178200274100008230	₩1,710,000	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
6	권오현	1978.00.15.	0178200274100003471 0178200274100003478 0178200274100003481 0178200274100003486 0178200274100003487	₩50,940,000 ₩36,676,800 ₩36,676,800 ₩16,621,200 ₩16,621,200	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
7	조윤원	1974.00.30.	0178200274100008215	₩1,71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 번길
8	홍성훈	1982.00.11.	0178200274100008224	₩12,225,6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15 번길
9	최종관	1962.00.20.	0178200274100000174 0178200274100000145	₩4,558,000 ₩150,000	충북 충주시 연수서 3 길
10	박대환	1986.00.11.	0178200274100008223	₩12,927,600	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 1 길
11	박용자	1967.00.10.	0178200274100008216	₩8,610,000	충북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방곡 3 길
12	이종관	1996.00.26.	0178210274100000690	₩9,615,000	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정
13	이종철	1975.00.23.	0178200274100003482	₩31,860,000	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
14	신정호	1966.00.14.	0178200274100008866 0178200274100008226	₩13,018,320 ₩20,664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 34 번길
15	서민원	1961.00.21.	0178200274100008218	₩17,700,000	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5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